

# 평생교육원 학칙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본 교육원은 평생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교양교육, 도덕교육, 가치교육, 사회복사교육 및 예능교육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, 대학의 자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열린 교육사회,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) 본 교육원은 침례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본 교육원”)이라 한다.

제 3 조(위치) 본 교육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침례신학대학교 내에 둔다.

## 제 2 장 조 직

제 4조(원장) ① 평생교육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본 원을 대표하며 소속 교직원의 업무를 지휘, 감독한다.

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이며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4 조 1(조직) 본 교육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① 원장

② 운영위원회

③ 평생교육부

제 5 조 (교직원) 각 교육부의 부장 및 직원은 소관의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, 교육원생 지도, 교무, 학사 및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 6 조(구성) ① 본 교육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
제 7 조(심의·의결) ① 심의·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2.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
3. 수강인원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

4.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
5. 기타 본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② 의결 정족수는 위원회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기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8 조(임기)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4 장 교육과정

제 9 조(과정)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두며, 과정별 세부 교육과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- ① 신학교육과정
- ② 일반교양교육과정
- ③ 전문자격증과정
- ④ 예능교육과정
- ⑤ 학점은행제과정
- ⑥ 특별과정 및 기타 필요한 과정

제 10 조(입학자격) 과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은 입학할 수 있다.

제 11 조(지원절차) 본 교육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소정의 서류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소정의 서류는 별도로 정한다.

제 12 조(선발방법) 본 원의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육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 13 조(수학년한) 각 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제 14 조 1(수업) 본 교육원의 수업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주, 야간, 주말 또는 계절제 등 탄력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.

제 14 조 2(수업장소) 본 교육원의 수업장소는 본교를 이용한다.

제 15 조(학점) 교과목 이수 단위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예체능 수업의 경우 수업방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 단, 학점은행제과정은 [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]에 따른다.

제 16 조(시험 및 성적)

①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으로 나누되 임시 시험을 필요에 따라 수시에 시행할 수 있다.

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은 분류 표시한다.

등급	실점	평점	등급	실점	평점	등급	실점	평점
A <sup>+</sup>	97-100	4.5	A <sup>o</sup>	94-96	4.3	A <sup>-</sup>	90-93	4.0
B <sup>+</sup>	87-89	3.5	B <sup>o</sup>	84-86	3.3	B <sup>-</sup>	80-83	3.0
C <sup>+</sup>	77-79	2.5	C <sup>o</sup>	74-76	2.3	C <sup>-</sup>	70-73	2.0
D <sup>+</sup>	67-69	1.5	D <sup>o</sup>	64-66	1.3	D <sup>-</sup>	60-63	1.0
F	0-59	0						

제 17 조(등록) 본 교육원의 학습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 과정별로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18 조(학습비)

- ①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과정별로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해야하며, 이미 납입한 학습비는 과오납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② 학습비 책정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과오납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, 반환금액은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다.
  1.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
  2. 개강 전에 입학을 포기한 경우
  3. 본인의 질병 또는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
제 19 조(수료증 수여) 각 과정의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<별지 1>을 수여한다.

## 제 5 장 수강생 활동

제 20 조(자치회)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.

② 삭제

제 21 조(학생활동의 금지) 학생은 본원 수강기간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활동,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## 제 6 장 회 계

제 22 조(회계년도) 본 교육원 회계연도는 침례신학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23 조(재정) 본 교육원 재정은 수강료,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시), 기타 수입 및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교육원의 회계는 사립학교 비등록금회계관리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 7 장 기 타

제 24 조(준용사항) 본 원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부칙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 원칙은 ①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199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③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④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)

제 호

## 수료증

성 명:

생년월일: 년 월 일

위 사람은 침례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\_\_\_\_\_

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침례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원장 000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침례신학대학교 총장 000 (인)